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65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7.

발 의 자:정청래·김민철·김병주

신현영 · 오영환 · 이수진

이원택 • 임오경 • 임호선

주철현 · 최혜영 · 홍성국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9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3항 중 "명기"를 "명확하게 기록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	제19조(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
치) ① ~ ② (생 략)	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	③
을 사전에 징수 · 예치하고자	
하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조합	
원별 부담금 배분기준, 부담금	
예정액, 계좌번호 등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사항을 <u>명기</u> 한 납	<u>명확하게</u>
부고지서를 조합원에게 통지하	<u>기록</u>
여야 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